웰컴자산운용
Welcome Asset Management

투자위험등급 4등급[보통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웰컴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웰컴공모주알파청년형소득공제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웰컴공모주알파청년형소득공제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형]**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웰컴공모주알파청년형소득공제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웰컴자산운용㈜

3. **판 매 회 사:**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및 집합투자업자 (www.welcomefund.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2026년 4월 6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6년 4월 10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02-6353-7300/ www.welcomefund.co.kr), 각 판매회사

9. 인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음

※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투자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 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6 등에 따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일부 환매가 허용되지 않으며 가입 후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일정비율(100분의6)을 곱한 금액을 추징(지방소득세 포함 시 추징세액 추가)하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에는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집합투자기구 투자 시에는 사전에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또는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이 투자신탁은 공모주를 투자함에 있어 일부 종목의 경우, 유리한 가격 및 더 많은 물량 확보를 위해 필요 시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습니다. 매도금지에 해당하는 공모주 비중이 극히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매도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금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 적시에 환매에 응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이 투자신탁이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리츠(REITs)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과 같이 거래되므로 주식과 같은 가격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츠의 가격은 부동산 경기 외에도 주식시장 상황, 수급 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좋은 상황에도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상장된 리츠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12. SPAC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SPAC의 존속기한 동안 합병대상법인을 찾지 못하거나 합병에 실패할 경우 해당 SPAC은 청산되며 이에 따라 SPAC투자의 주요한 목적인 합병차익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SPAC은 사전에 합병대상회사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SPAC의 경영진 및 발기인들의 M&A경험과 투자발굴(Deal Sourcing) 능력 등이 해당 SPAC의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웰컴자산운용
Welcome Asset Management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2026.04.06.

웰컴공모주알파청년형소득공제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형] [펀드코드 : DS411]

투자위험등급
4 등급 (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웰컴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을 주로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95% 이상**을 투자합니다. 따라서 주식 등의 투자에 따른 **가격변동위험, 파생상품 투자위험, 공모주 투자위험** 등에 노출되며,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웰컴공모주알파청년형소득공제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45%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며, 그 중 롱숏전략을 통해 편입한 장내주식의 경우 코스닥 150 지수선물 및 인버스 ETF 를 활용하여 변동성을 낮추면서 시장 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추구하고, 철저한 기업분석을 통한 우량 공모주(주식+리츠(REITs)+스팩(SPAC))와 상장된 리츠 및 스팩에 선별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상승과 자본이득에 따른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웰컴공모주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형]**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2. 투자전략** 1) 롱숏전략: 알파수익 추구 기본전략 - 코스닥 상장주식을 기본 유니버스로 하여 투자 유망한 섹터 및 종목을 선별 투자하는 한편, 코스닥 150 지수선물 매도/인버스 ETF 매수를 통해 주식시장의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알파수익을 추구하는 기본전략 2) 공모주 투자 전략: 투자신탁재산의 15%내외로 투자 - 저평가 우량공모주에 선별투자 함으로써 시장의 등락과 상관없이 '플러스알파'수익창출 추구 - 가치분석에 근거한 공모 기업 투자판단 3) 스팩(SPAC) 투자전략: 추가수익추구 - 매입단가 최소화 및 물량 확보 효과를 위한 공모 참여 - 합병 대상기업의 밸류에이션 및 성장성 분석 후 장내 매수 4) 상장 공모 리츠 투자전략: 추가수익추구 - 우량 자산을 보유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공모 리츠 편입을 통해 높은 수준의 배당수익 추구 - 공모주청약으로 배정된 공모 리츠+상장 공모 리츠 장내 매수 ※ 펀드 설정 시 운용 계획상 상기 공모주의 목표 투자비중은 투자신탁재산의 15% 내외를 타겟으로 하나, 시장상황에 따라 이에 현저히 못 미칠 수도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추후 공모주에의 실제 투자비중은 예상 비중 보다 높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공모주청약은 참여기관이 많은 경우 받는 양이 제한적일 수 있고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혼합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 가능), 모자형(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집합투자기구)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 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소득공제(C)	-	1.145	0.60	1.580	1.145	117	239	366	633	1,398
수수료미징구-온라인-소득공제(C-E)	-	0.845	0.30	1.180	0.845	87	177	271	470	1,046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소득공제(S-T)	-	0.825	0.28	-	0.825	85	173	264	459	1,023

주 1) '1,000 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포함)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은 수수료선취-오프라인(종류 A 형)과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종류 C 형) 클래스를 동시에 보유하지 않아 클래스간 판매수수료 차이 및 보유기간에 따른 비용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4)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기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5 년차	설정일이후	최초설정일
	25.04.07 ~ 26.04.06	24.04.07 ~ 26.04.06	23.04.07 ~ 26.04.06	-	23.04.06 ~ 26.04.06	
수수료미징구-온라인-소득공제(C-E)	16.90	10.17	8.39	-	8.41	2023-04-06
비교지수	15.44	5.02	5.10	-	5.08	
수익률변동성	12.44	10.08	8.43	-	8.43	

주 1) 비교지수: (KOSDAQ 150 지수 * 20%)+(KRX 부동산리츠인프라지수 * 30%)+(CD 금리 * 50%)

①설정일부터 2023 년 4 월 24 일까지 : (KOSDAQ 150 지수 * 20%)+ (CD 금리 * 80%)

②2023 년 4 월 25 일부터 2026 년 4 월 9 일까지 : (KOSDAQ 150 지수 * 20%)+(KRX 리츠 TOP10 지수 *30%)+(CD 금리 * 50%)

③2026 년 4 월 10 일부터 현재 : (KOSDAQ 150 지수 * 20%)+(KRX 부동산리츠인프라지수 *30%)+(CD 금리 * 5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 4)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5)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 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혼합주식형, %)				운용 경력년수
			집합 투자 기구수	운용 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박승민	1991	책임 (주식운용 2 팀, 과장)	16	4,392	17.77	11.02	147.54	67.37	4 년 2 개월
송환일	1997	부책임 (주식운용 2 팀, 사원)	15	3,592	-	-	147.54	67.37	3 개월

주 1)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을 함에 있어서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3)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 4)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 및 이력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0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의 6 등에 따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일부 환매가 허용되지 않으며 가입 후 3 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일정비율(100 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지방소득세 포함시 추징세액 증가)하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주요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어음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 악화, 신용상태 악화 등의 원인으로 신용도 하락, 채무 불이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원금과 이자에 대한 회수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투자신탁의 환매연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 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공모주에 투자하며, 공모주는 일반적인 상장 주식에 비해 큰 가격변동성을 지녔으며, 한정된 물량 하에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 금지 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인 가격변동으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장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의 가격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이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리츠(REITs)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과 같이 거래되므로 주식과 같은 가격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츠의 가격은 부동산 경기 외에도 주식시장 상황, 수급 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좋은 상황에도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상장된 리츠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SPAC 의 사업목적 특수성에 따른 위험	SPAC 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SPAC 의 존속기한 동안 합병대상 법인을 찾지 못하거나 합병에 실패할 경우 해당 SPAC 은 청산되며 이에 따라 SPAC 투자의 주요한 목적인 합병차익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SPAC 은 사전에 합병대상회사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SPAC 의 경영

	진 및 발기인들의 M&A 경험과 투자발굴(Deal Sourcing) 능력 등이 해당 SPAC 의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이 투자신탁은 공모주를 투자함에 있어 일부 종목의 경우, 더 많은 물량을 유리한 가격에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기간 보호예수(Lock-up)에 종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SPAC 은 일반 주식에 비해 거래량이 부진할 수 있어 시장매각 시 유동성 부족에 따른 매매가격하락으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상기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 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 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매입 방법	•15 시 30 분 이전: 2 영업일 기준가 매입 •15 시 30 분 경과 후: 3 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 방법**	•15 시 30 분 이전: 2 영업일 기준가, 4 영업일 지급 •15 시 30 분 경과 후: 3 영업일 기준가, 4 영업일 지급
환매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 서류공시: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수익자	•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은 거주자 개인, 내국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됩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0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의 6 • 가입자격: 가입일 현재 만 19 세 이상 34 세 이하인 사람[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27 조제 1 항제 1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 년을 한도로 한다)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 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 천 8 백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입기간: 2025 년 12 월 31 일까지(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 매수일 기준) • 저축계약기간: 3 년 이상 5 년 이하(단 3 년 이내 해지시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한도로 추징) • 가입한도: 연 600 만원 이내(가입한 모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합계액을 말함) • 세제혜택: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 만원 한도, 다만, 3 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한 경우(가입일로부터 3 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제 3 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포함)에는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전환가입을 하기 위하여 해지한 경우 해지 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상기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td><td colspan="3">※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0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의 6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저축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 colspan="3">•해당사항 없음</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 colspan="3">웰컴자산운용㈜
(대표번호: 02-6353-73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welcomefund.co.kr)</td></tr>
<tr><td>모집기간</td><td>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td><td>모집·매출총액</td><td>10 조좌 (모집예정 금액 한도 내에서 존속기간 동안 계속 모집 가능)</td></tr>
<tr><td>효력 발생일</td><td>2026 년 4 월 10 일</td><td>존속기간</td><td>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www.welcomefund.co.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참조</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 종류</td><td colspan="3">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 colspan="2">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
<tr><td>판매 수수료</td><td>수수료 미징구(C)</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판매수수료선취형(A) 및 판매수수료미징구형(C)을 동시에 보유하지 않아 클래스 간 판매수수료 차이 및 보유기간에 따른 비용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td></tr>
<tr><td rowspan="3">판매 경로</td><td>온라인(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오프라인</td><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
<tr><td>온라인슈퍼(S)</td><td>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 rowspan="3">기타</td><td>소득공제(C)</td><td>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오프라인)</td></tr>
<tr><td>소득공제(C-E)</td><td>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온라인)</td></tr>
<tr><td>소득공제(S-T)</td><td>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온라인 판매시스템)</td></tr>
</table>
</td></tr>
</table>

[집합투자기구 공시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welcomefund.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welcomefund.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welcomefund.co.kr)

웰컴자산운용
Welcome Asset Management

CONTENTS

[목 차]

제 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 용어 풀이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웰컴공모주알파청년형소득공제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형]	**DS41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소득공제(C)	DS41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소득공제(C-E)	DS41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소득공제(S-T)	DS414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혼합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중도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표시

(1) 모자형: 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2) 종류형: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미해당

3. 모집예정금액: 10조좌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1좌당 1원, 최초설정시, 원본액 기준) 단위로 모집합니다.

주1)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3) 모집(판매) 예정금액 및 모집(판매) 예정기간은 예정보다 줄거나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으로 효력발생일 이후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2) 모집장소: 판매회사의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welcomefund.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의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웰컴공모주알파청년형소득공제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형]	**DS41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소득공제(C)	DS41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소득공제(C-E)	DS41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소득공제(S-T)	DS414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22. 05. 10.	집합투자업자 명칭 변경에 따른 펀드명 등 변경 (에셋원자산운용㈜ → 웰컴자산운용㈜)
2023. 04. 25.	1) 운용역 변경 ①책임운용역 : 최일구→ 박승민 ②부책임운용역 : 박승민→ 윤효성 2) BM변경 변경 전) 코스닥150 20% + CD 80% 변경 후) 코스닥150 20% + KRX리츠TOP10지수 30% + CD 50% 3) 집합투자업자 주소 변경
2024.05.09.	1) 정기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2)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2023.02.20 및 2024.03.01.시행) 3)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21.10.21.시행) 4)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 5)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수익률 변동성 기준 변경) 6)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및 주소변경
2025.05.27.	1) 정기 결산에 따른 업데이트 2)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3)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사항 반영(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5) 채권평가회사 추가(NICE피앤아이)
2025.12.30.	1)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2) 부책임운용역 변경 - 윤효성 → 송환일
2026.04.10.	1) 정기결산에 따른 업데이트 2) 정기 결산에 따른 위험등급 산정기준 및 투자위험등급 변경 (설정 후 3년 경과) ①위험등급 산정기준 :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실제 수익률 변동성(VaR) ②투자위험등급 : 2등급 → 4등급 3) BM 변경 -변경 전: (KOSDAQ150지수 * 20%)+(KRX리츠TOP10지수 *30%)+(CD금리 * 50%) -변경 후: (KOSDAQ150지수 * 20%)+(KRX부동산리츠인프라지수 *30%)+(CD금리 * 50%)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간, 즉, 일반적인 용어로 저축만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웰컴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48, 웰컴금융타워 15층 (대표전화: 02-6353-7300, 홈페이지: www.welcomefund.co.kr)

주)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26.04.06. 기준)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혼합주식형, %)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 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박승민	1991	주식운용2팀 (과장)	16	4,392	17.77	11.02	147.54	67.37	4년2개월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골든컴퍼스투자자문 주식운용본부(2015~2017) -로만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2017~2019)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주식운용팀(2019~2021) -웰컴자산운용 주식운용2팀(2021~현재)						

②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혼합주식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 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송환일	1997	주식운용2팀 (사원)	15	3,592	-	-	147.54	67.37	3개월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한국자산평가 주식옵션평가팀(2023~2024) -웰컴자산운용 주식운용2팀(2024~현재)						

주1)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을 함에 있어서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3)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4)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 및 이력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5) 책임운용전문인력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박승민: 1개 / 134억

-송환일: 1개 / 134억

③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운용기간	성명	운용기간
최일구	2022.04.01 ~ 2023.04.24	박승민	2022.04.01 ~ 2023.04.24
박승민	2023.04.25 ~ 현재	윤효성	2023.04.25 ~ 2025.12.29
		송환일	2025.12.30 ~ 현재

주)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집합투자기구(혼합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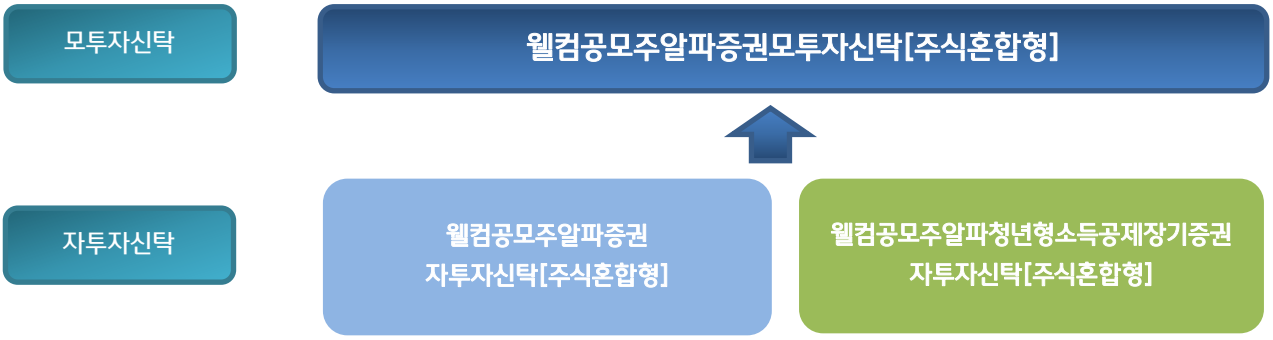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1조에 의거,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가입자격	판매보수 (연간, %)	수수료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소득공제(C)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으로 오프라인 가입자(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정한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투자자에 한함)	0.60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소득공제(C-E)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으로 온라인 가입자(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정한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투자자에 한함)	0.30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소득공제(S-T)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으로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정한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투자자에 한함)	0.28	-	

※ 수익증권의 각 종류별 운용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 회사 보수는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서 그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대상 모투자신탁	**웰컴공모주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형]**
모투자신탁 투자비율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5% 이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주요투자대상 및 투자목적	코스닥150지수를 구성하는 상장주식 및 신규상장 공모주, 스팩(SPAC) 등의 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45% 이상을 투자하여 시장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며, 공모 리츠(REITS) 편입을 통해 높은 수준의 배당수익을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투자전략> 1) 롱숏전략: 코스닥 상장주식을 기본 유니버스로 하여 투자 유망한 종목을 선별 투자하는 한편, 코스닥 투자에 따른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해 코스닥150지수선물을 매도, 인버스ETF를 매수하는 전략 2) 공모주투자전략: 저평가된 IPO 종목을 선별 투자하여 시장 대비 차별적인 수익창출을 추구하는 전략 3) SPAC 투자전략: 리서치에 기반한 유망 SPAC의 IPO 시 수요예측에 참여하거나 장내 매수하여 적극적인 인컴수익을 추구하는 전략 4) REITs 투자전략: 우량 자산을 보유하여 배당수익률이 높은 공모 리츠 편입을 통해 높은 수준의 배당수익을 추구하는 전략 <위험관리> - 투자실행 이전부터 편입 종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리스크 분석 수행 - 펀드 운용과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리스크요인 별로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고객에 대한 선량한 자산관리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

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투자전략, 투자위험 및 기타 중요 유의사항 등은 해당 모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45%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며, 그 중 롱숏전략을 통해 편입한 장내주식의 경우 코스닥150 지수선물 및 인버스ETF를 활용하여 변동성을 낮추면서 시장 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추구하고, 철저한 기업분석을 통한 우량 공모주(주식+리츠(REITs)+스팩(SPAC))와 상장된 리츠 및 스팩에 선별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상승과 자본이득에 따른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웰컴공모주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형]**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주요내용
①웰컴공모주알파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형]	95% 이상	이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45%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며, 그 중 롱숏전략을 통해 편입한 장내주식의 경우 코스닥150 지수선물 및 인버스ETF를 활용하여 변동성을 낮추면서 시장 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추구합니다. 또한, 철저한 기업분석을 통한 우량 공모주(주식+리츠(REITs)+스팩(SPAC))와 상장된 리츠 및 스팩에 선별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상승과 자본이득에 따른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②단기대출/금융기관 예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해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주)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증권총액 기준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

투자대상		주요내용
①주식	45% 이상 90% 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 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②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A-이상이어야 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 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③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④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0 이상 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⑤집합투자증권 등	40% 미만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이하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한다.)
⑥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 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⑦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⑧증권의 차입	20% 이하	① 내지 ④의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⑨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 이하	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
⑩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⑪기타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금 및 환매조건부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해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⑪-2 기타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관련 규정)		다음 각 목의 합계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가.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비중(법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나. 기초자산의 특성, 가격결정의 방식,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비중 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합계가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하는 비중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증권총액 기준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주1) 증권의 대여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입니다.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합니다.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의 차입 :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대상	투자 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제한]

대상	투자 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①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②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 증서, 기업어음증 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 (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 중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 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 다),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 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 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 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1)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지 아니할 것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하씩 각각 나누어 투자할 것. 다만,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각각 30%까지 투자할 수 있고, 법시행령 제80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각각 10%까지 투자할 수 있다.	
③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④집합투자 증권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는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내에서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 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
⑤계열회사 발행 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⑥후순위 채권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 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대상 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①, ②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투자대상 ①, ②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 투자대상 ①, ②, ③, ④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모투자신탁 투자대상 ①, ②, ③, 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모투자신탁 투자대상 ⑤ 내지 ⑧, 모투자신탁 투자제한 ② 및 ③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 모투자신탁 투자제한 ②의 본문 규정 및 투자제한 ④의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시장상황에 따라 편입하게 될 집합투자증권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하며, 아래 정보를 통해 주된 투자대상, 전략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자산총액의 95% 이상을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일부터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과 같은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웰컴공모주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한 비율에 이 투자신탁의 **웰컴공모주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이렇게 계산된 매일의 실질적인 비율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1) 공모주투자전략 : 투자신탁재산의 15%내외로 투자

• 공모주투자 의사결정 기준

종목별분석, 밸류에이션을 기초로시장의 수급상황까지고려	밸류에이션의 매력도에따라, 투자가치가높은경우 의무보유확약을통해 배정비율을극대화	깊이있는분석: 탐방및IR참석, 내부분석및 외부전문가와 의견교류

• 공모주투자 프로세스

※ 팀 운용 체제 : 웰컴자산운용 공모주펀드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펀드매니저 개인의 자의적판단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펼칠 수 있도록 공모주 투자회의를 통해 투자를 결정하는 **팀운용체제를 지향합니다.** 이러한 팀의 결정에 대해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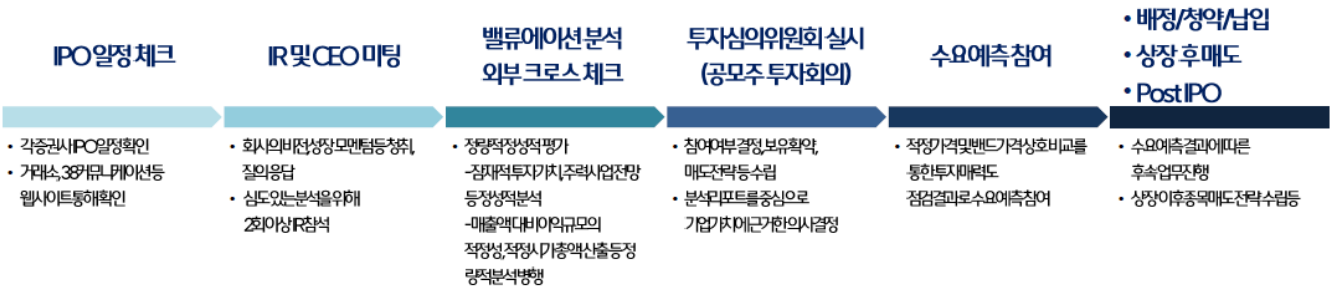

⇨ 공모주 펀드 운용에 경쟁력을 갖춘 웰컴자산운용의 노하우를 활용 IPO 선별적 투자

⇨ 투자매력도가 높은 종목은 의무보유확약을 통해 배정 물량 극대화 전략 사용

※ 펀드 설정 시 운용 계획상 상기 공모주의 목표 투자비중은 투자신탁재산의 15% 내외를 타겟으로 하나, 시장상황에 따라 이에 현저히 못 미칠 수도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추후 공모주에의 실제 투자비중은 예상 비중 보다 높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공모주청약은 참여기관이 많은 경우 받는 양이 제한적일 수 있고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투자전략등이반드시달성된다는보장은없으며,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등이투자신탁과관련된어떠한당사자도투자원금의보장또는투자목적의달성을보장하지아니합니다.

2) 롱숏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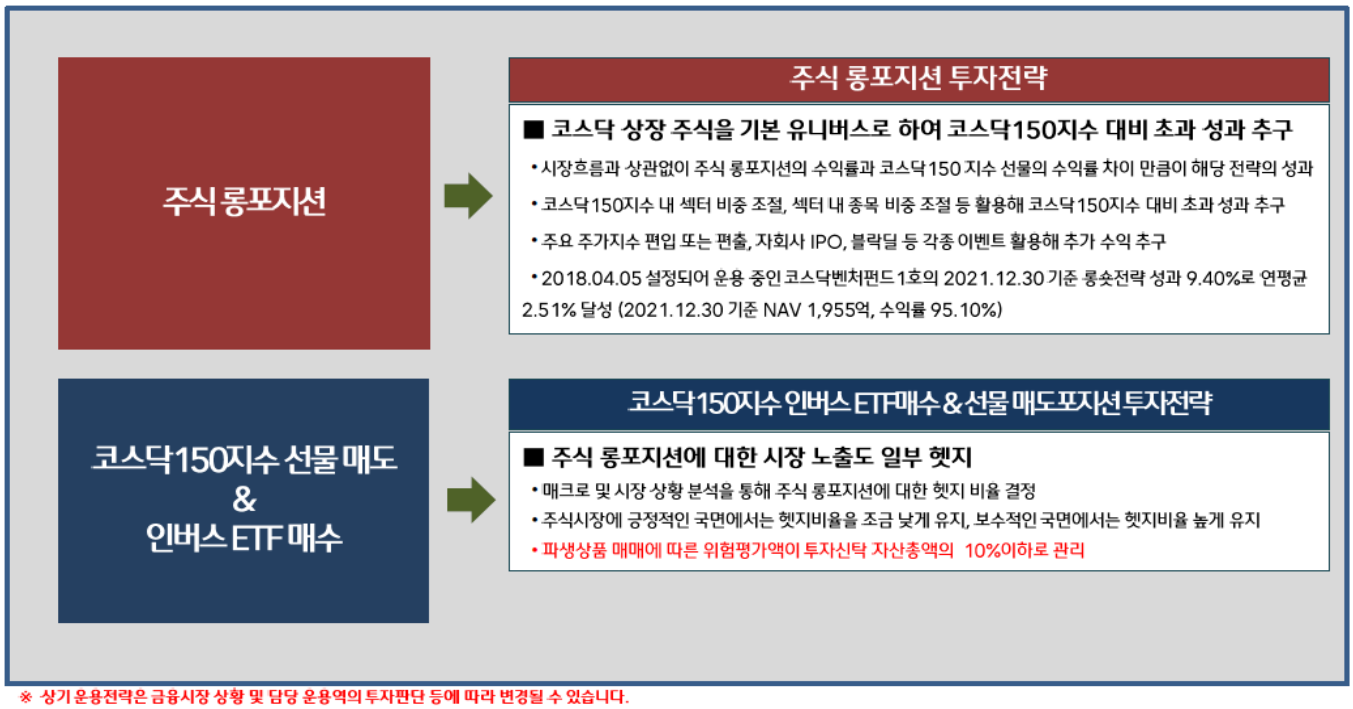

※ 상기 운용전략은 금융시장 상황 및 담당 운용역의 투자판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수익이 반드시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코스닥150지수 내 섹터 비중 조절, 섹터 내 종목 비중 조절, 기업 이벤트 활용 등을 통해 코스닥150지수 대비 초과 성과 추구

⇨ 코스닥150지수 선물 매도& 인버스ETF 매수를 통해 시장 위험을 헷지하며,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변동성 최소화 추구

3) 스팩(SPAC) 투자전략

스팩(SPAC)이란?	• 공모(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 수목적회사(Paper Company)
스팩(SPAC) 특징	•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별도 예치하고 3년내 합병에 실패할 경우 반환(예치금은 인출, 담보금지)되어 안전성이 높음 • 상장 후 장내매도 가능하고 합병반대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해 높은 환금과 유동성 보유 • 스팩(SPAC)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기업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음 (2018년 11건, 2019년 11건, 2020년 17건, 2021년 15건)
투자전략	①스팩(SPAC) IPO 참여를 통한 투자 ②공모가(2,000원) 수준 또는 과거 합병 데이터 분석 및 웰컴내부 리서치를 통한 스팩(SAPC) 장내 매수 ③합병결정시, 합병대상 기업분석을 통한 적정가치 산정 및 매도 타이밍 포착

⇨ 스팩은 하방이 막혀있고 합병시 업사이드가 열려있는 자산으로 투자매력도가 높음

⇨ 긍정적인 공모 시장이 계속되며 스팩을 통해 상장하는 기업의 지속 증가 기대

※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기업인수목적회사)은 기업공개(IPO)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IPO 이후 3년 이내에 비상장업체를 인수합병(M&A)하는 조건으로 특별 상장되는 서류상의 회사입니다. SPAC은 내부의 M&A 전문가가 비상장사 중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해 인수합병하고 SPAC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M&A 이후 회사 주가가 오르면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리츠(REITs) 투자전략

REITs란?	• 2001년 도입, 투자자 자금을 모집, 부동산에 투자 후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자기/위탁/CR)
성장형 REITs 시대의 개막	•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2022.01.12 발표)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2022.02.17)등 국토교통부 주도로 **공모리츠 활성화 추진** • **수익의 약 90%를 배당**하므로 저금리 저성장 기조에서 높은 배당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음
투자전략	①**보유 부동산의 가치상승 가능성** 및 추가 편입 예정자산군의 안정성 여부 ②편입 자산의 적정성, 리츠의 운용 목적에 맞는 자산이며 전체 자산 대비 **적절한 Cap rate 보유 여부** ③연배당수익률 5% 수준이 나오는 **고배당 리츠** 여부 위 세가지 요소를 검토 후 **"신규 상장 리츠 종목에 수요예측 참여 및 장내 매수 "**

※ Cap. Rate (Capitalization Rate, 자본환원율) : 부동산의 투자수익성을 분석하는 지표. 순수익을 같은 시점의 부동산 시장가치와의 비율로 전환. Cap. Rate = NOI (순영업소득) / 부동산가치 (매입가)

⇨ 공모리츠 활성화 정책에 따라 투자매력도 높은 리츠의 수가 늘어나고, 국내 리츠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가 기대됨

⇨ 우량 자산을 보유하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공모 리츠 편입을 통해 안정적인 인컴 수익 추구

※ 리츠(REITs)는 부동산투자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으로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 또는 투자신탁입니다. 리츠는 설립형태에 따라 회사형과 신탁형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회사형은 뮤추얼펀드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으는 형태로서 투자자에게 일정기간을 단위로 배당을 하며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매매되고 있습니다.

※ 비교지수: (KOSDAQ150지수 * 20%)+(KRX부동산리츠인프라지수 *30%)+(CD금리 * 50%)

①설정일부터 2023년 4월 24일까지 : (KOSDAQ150지수 * 20%)+ (CD금리 * 80%)

②2023년 4월 25일부터 2026년 4월 9일까지 : (KOSDAQ150지수 * 20%)+(KRX리츠TOP10지수 *30%)+(CD금리 * 50%)

③2026년 4월 10일부터 현재 : (KOSDAQ150지수 * 20%)+(KRX부동산리츠인프라지수 *30%)+(CD금리 * 50%)

- KOSDAQ150지수: 코스닥시장의 기술주 섹터에 중점을 두면서 코스닥 종합지수의 흐름을 잘 따라가도록 시장대표성, 섹터대표성, 유동성 등의 기준으로 선정된 150개 종목으로 구성된 코스닥 시장의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 KRX 부동산리츠인프라 지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 종목 및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종목을 구성종목으로 하여 산출하는 지수입니다.
- CD금리: 양도성예금증서(CD)가 발행되어 유동시장에서 거래될 때 적용되는 금리로 코픽스 금리와 함께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금리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단기금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1)비교지수 선정사유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20% 이상을 코스닥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면서 포트폴리오 일부 헤지전략(KOSDAQ150선물매도)을 수행합니다. 또한 공모리츠에 30% 내외로 투자하며, 공모주, SPAC 등의 다양한 투자자산을 편입합니다. 따라서 실제 코스닥주식 투자비중 20%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을 대표하는 KOSDAQ150 지수를 적용하고, 공모리츠 투자비중 30%에 대해서는 KRX부동산리츠인프라지수, 나머지 50%는 단기금리의 대표지표 중 하나인 3개월물 CD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이 투자신탁에서 수행하는 운용전략을 반영한 성과비교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주2)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생성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에는 변경등록 및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2) 위험관리

- 투자실행 이전부터 종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리스크 분석을 수행

⇒ 펀드 운용과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리스크요인 별로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고객에 대한 선량한 자산관리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

(3) 유동성 위험 및 그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1)유동성 위험

이 투자신탁은 공모주를 투자함에 있어 일부 종목의 경우, 유리한 가격 및 더 많은 물량 확보를 위해 필요 시 일정기간 보호예수(Lock-up)에 종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예수를 신청하는 공모주에 대하여는 보호예수 기간 최소화, 보호예수신청 종목의 최소화 등을 통하여 장기보유에 따른 유동성 위험을 최대한 회피하며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보유에 따른 가격변화위험, 해당 종목의 이슈사항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보호예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2)유동성 위험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당사는 유동성 위험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 환매와 신규설정에 따른 유동성 비율 상시 모니터링
2. 보호예수를 통해 유동성이 제한된 공모주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율 모니터링 및 제한
3. 대량환매 발생시 유동성 확보 극대화 및 약관에 따른 환매 연기 조치 비상 플랜 설정

나. 수익구조

-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어음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 악화, 신용상태 악화 등의 원인으로 신용도 하락, 채무 불이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원금과 이자에 대한 회수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투자신탁의 환매연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증권대여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재산을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해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차입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재산을 증권 차입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차입 자산을 공매도(short selling)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 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매도가-매수가)만큼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및 운용에 대한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은 단기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레버리지 위험을 포 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원금액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ETF 등)에 집합투자재산을 일부 투자할 수 있으므로 만약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피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대금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적은 증거금으로 큰 금액의 매매를 할 수 있는 지렛대효과(레버리지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의 범위는 무한대로 이 투자신탁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펀드규모 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적어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증권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매 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위험	공모주는 기존의 상장된 주식보다 더 큰 가격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으며 공모주 물량은 한정되어 있어서 동일한 거래를 하려는 시장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는데 있어서도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주는 보다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 (Lock 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 이후 당해 공모주가 상장되기까지는 일정한 시일이 소요되며 당해 공모주의 처분이 불가능하므로 동 기간 이 투자신탁의 해지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장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의 가격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이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리츠(REITs)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과 같이 거래되므로 주식과 같은 가격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츠의 가격은 부동산 경기 외에도 주식시장 상황, 수급 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좋은 상황에도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상장된 리츠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SPAC의 사업목적 특수성에 따른 위험	SPAC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SPAC의 존속기한 동안 합병대상법인을 찾지 못하거나 합병에 실패할 경우 해당 SPAC은 청산되며 이에 따라 SPAC투자의 주요한 목적인 합병차익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SPAC은 사전에 합병대상회사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SPAC의 경영진 및 발기인들의 M&A경험과 투자발굴(Deal Sourcing) 능력 등이 해당 SPAC의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 준가격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2부. 11. 매입·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나. 환매/(7)수익증권의 환매연기사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중지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용실적 위험	과거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오류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1000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 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위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연기 또는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거래위험	증권대차거래가 일어나는 투자신탁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VaR)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이 19.66% 이므로** 투자위험 6등급 중 **4등급(보통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45%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주가상승에 따른 자본차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인 **웰컴공모주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형]**에 신탁재산의 95% 이상을 투자합니다. 따라서, 주식 하락에 따른 원본손실위험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상기 위험수준을 이해하면서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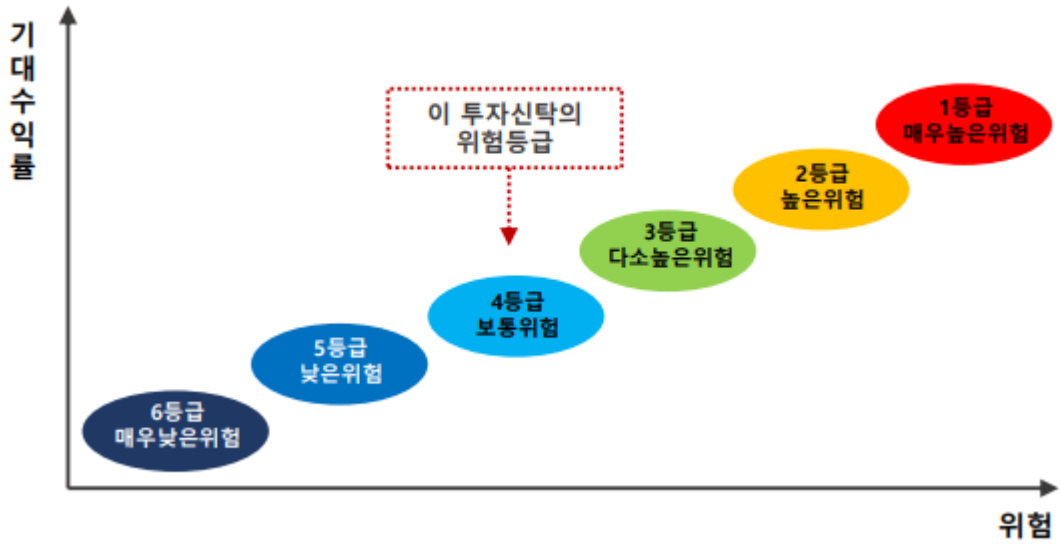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 – 설정 후 3년 경과 시, 97.5% VaR 모형* 사용]

등급	1등급 (매우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낮은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250)를 곱해 산출

주1)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VaR값 00%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00%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2)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VaR로 산출한 위험등급에서 1등급 상향합니다.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로 연동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주3) 과거 수익률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위험등급을 부여합니다.

주4)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 펀드는 수익률 변동성에 신용위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입자산의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 (예) 장외채권이거나 매매시장에서의 유동성이 낮아 시가변동이 미미한 경우

※ 이 투자위험 등급분류는 웰컴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이며,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 위험등급 변경 내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2026.04.10.	2등급	4등급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2등급) →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 (4등급 : 19.66%)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하며,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 이 집합투자기구의 매입 가능한 수익증권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거나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소득공제(C)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으로 오프라인 가입자(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정한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투자자에 한함)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소득공제(C-E)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으로 온라인 가입자(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정한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투자자에 한함)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소득공제(S-T)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으로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정한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투자자에 한함)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3시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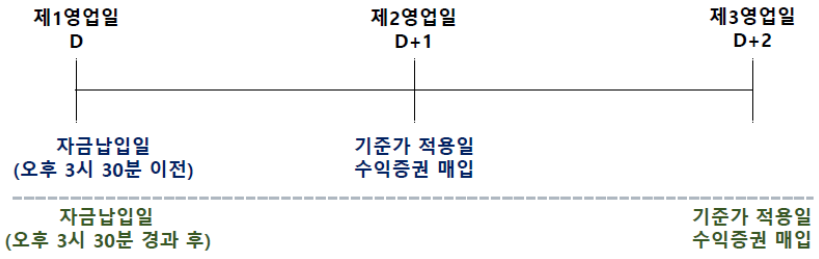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주)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각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 정정은 매입청구일 **오후 3시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오후 3시30분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나. 환매

※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발생하지 않음)
		○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 또는 판매회사 인터넷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나) **오후 3시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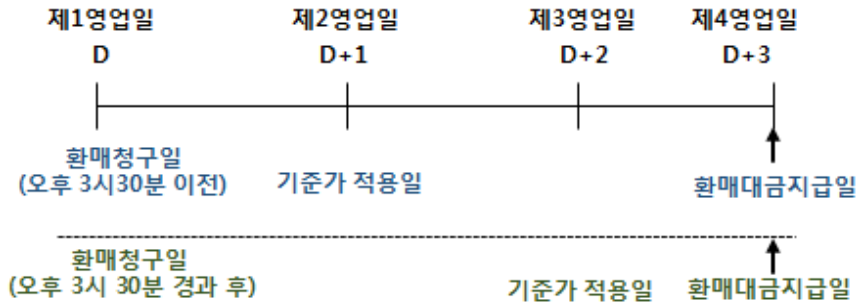

주)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각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3) 환매수수료

이 집합투자기구의 모든 종류형 수익증권은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 정정은 환매청구일 **오후 3시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오후 3시30분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직전 제2영업일(오후 3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일정한 날의 직전 제3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 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법시행령 제256조)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 내지 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은 그 공고 · 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 · 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 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집합투자업자(http://www.welcomefund.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준가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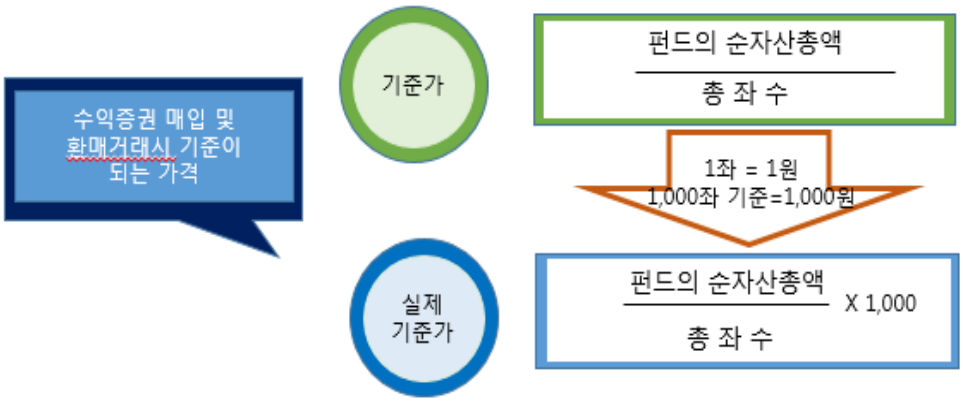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집합투자재산은 그 종류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 가 방 법
상장주식 또는 등록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
비상장 · 비등록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무증권	상장채무증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 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한다)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무증권	비상장채무증권(상장채무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을 포함)은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함)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 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2)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위원회 구성	위원장: 집합투자재산 평가담당 임원 위 원: 집합투자재산 운용담당 본부장,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조직에 실장이 있는 경우 그 실장,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간 사: 집합투자재산 평가담당팀장
업 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유지에 필요한 사항 2. 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4. 부도채권등 부실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 또는 공정가격 산정이 곤란한 투자재산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7.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8. 기타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관련법규 및 약관에 의해 위임된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법 제76조제4항에서 정한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들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소득공제(C)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으로 오프라인 가입자(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정한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투자자에 한함)	-	-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소득공제(C-E)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으로 온라인 가입자(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정한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투자자에 한함)	-	-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소득공제(S-T)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으로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정한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투자자에 한함)	-	-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종류)	집합 투자 업자	판매 회사	신탁 업자	일반 사무 관리	총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 총보수 ·비용	증권 거래 비용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소득공제(C)	0.500	0.600	0.030	0.015	1.145	-	1.145	1.580	1.145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소득공제(C-E)	0.500	0.300	0.030	0.015	0.845	-	0.845	1.180	0.845	2.2376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소득공제(S-T)	0.500	0.280	0.030	0.015	0.825	-	0.825	-	0.825	-

보수	매 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5.04.06 ~ 2026.04.05]

※ 기타비용 : 감사보수, 펀드평가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분담금, 보관대리인보수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기타비용	-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5.04.06 ~ 2026.04.05]

※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증권거래비용 :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중개수수료, SWAP매매수수료, 대차관련 수수료, REPO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매매수수료, 해외파생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증권거래비용	183

※ 금융비용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금융비용	-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 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합성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6)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 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 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수익증권 종류	구분	1 년후	2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소득공제(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7	239	366	633	1,39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17	239	366	633	1,398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소득공제(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7	177	271	470	1,04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87	177	271	470	1,046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소득공제(S-T)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5	173	264	459	1,02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85	173	264	459	1,023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 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집합투자규약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투자신탁은 매년 결산, 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 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 · 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의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펀드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펀드 단계에서는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 의무자(판매사 등)가 투자자에게 펀드 소득 지급 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이자·배당소득)에서 투자자별 외국납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2025년 01월 01일 이후부터 적용)
-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6
가입자격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확인증명서 및 병적증명서(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가입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 매수일 기준)
저축계약기간	3년 이상 5년 이하 * 단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 시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한도로 추징
가입한도	연 600만원 이내 (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합계액을 말함)
세제혜택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가입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한 경우(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환가입을 하기 위하여 해지한 경우 해지 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7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4.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이하 "전환가입"이라 한다)한 경우. 이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그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된 금액 중 전환가입에 따라 종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이체된 금액으로 한정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가입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연도의 저축금 납입액이 명시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면세액추징	가입자가 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이하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저축 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1.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전환가입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3.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전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6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저축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3기(2025.04.06 - 2026.04.05)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2기(2024.04.06 - 2025.04.05)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기(2023.04.06 - 2024.04.05)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통합 재무상태표			
항 목	제 3기 (2026.04.05)	제 2기 (2025.04.05)	제 1기 (2024.04.05)
운용자산	10,199,454	6,254,628	6,022,988
증권	10,084,391	6,189,014	5,930,065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15,063	65,614	92,923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32	22,008	38
자산총계	10,199,486	6,276,636	6,023,026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9,741	33,810	11,933
부채총계	19,741	33,810	11,933
원본	7,947,215	5,725,757	5,724,313
수익조정금	385,205	87,565	87,852
이익잉여금	1,847,325	429,504	198,928
자본총계	10,179,745	6,242,826	6,011,093

(단위: 원, %)

통합 손익계산서			
항 목	제 3기 (2025.04.06 - 2026.04.05)	제 2기 (2024.04.06 - 2025.04.05)	제 1기 (2023.04.06 - 2024.04.05)
운용수익	1,286,161	189,033	218,172

이자수익	1,773	2,405	1,131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1,284,388	186,628	217,041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67,157	45,646	18,975
관련회사 보수	67,157	45,646	18,975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052	669	269
당기순이익	1,217,952	142,718	198,928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위 재무제표는 운용 펀드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대차대조표의 부채 및 자본항목과 손익계산서의 비용 항목은 각 개별 종류 수익증권의 해당 항목 값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주3) "재무정보상의 대차대조표"와 "감사(BSPL)상의 대차대조표"의 자본총계는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주4) "재무정보상의 손익계산서"와 "감사(BSPL)상의 손익계산서"의 당기 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주5)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6) 매매회전율 산출 관련 주식 매수·매도 금액, 보유주식의 평균가액,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등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 주,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1,819,650	46,524	2,039,287	49,997	4,906	1,019.04	32.09

※위 표는 해당 자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운용펀드)의 운용내용과 결산기로 작성되었습니다.

(주7)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자산별(주식·주식이외의 증권·부동산·장내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 등) 거래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기(2025.04.01 - 2026.03.31)			전기(2024.04.01 - 2025.03.31)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96,452	98	0.1014	48,265	49	0.102
주식이외의증권 (채권등)	9,384	9	0.0999	8,801	9	0.0995
부동산	-	-	-	-	-	-
장내파생상품	15,316	10	0.0652	13,825	9	0.0664
장외파생상품	-	-	-	-	-	-
기타(REPO,대차,콜 등)	68,150	7	0.0099	40,100	0.06	0.0002
합계	189,302	124	0.0654	110,991	67	0.0605

※위 표는 해당 자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운용펀드)의 운용내용과 결산기로 작성되었습니다.

나.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 목	제3기(2026.04.05) 금 액		제2기(2025.04.05) 금 액		제1기(2024.04.05)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115,063		65,614		92,923
1. 현금및현금성자산	115,063		65,614		92,923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10,084,391		6,189,014		5,930,065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10,084,391		6,189,014		5,930,065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32		22,008		38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32		20		38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21,988			
6. 기타자산						
7.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10,199,486		6,276,636		6,023,026
부 채						
운 용 부 채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19,741		33,810		11,933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21,970			
4. 수수료미지급금	19,741		11,840		11,933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19,741		33,810		11,933
자 본						
1. 원 본	7,947,215		5,725,757		5,724,313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2,232,530		517,069		286,780	
(발행좌수 당기: 7,947,215 좌	이익잉여금	1,847,325		429,504		198,928
전기: 5,725,757 좌	수익조정금	385,205		87,565		87,852
전전기: 5,724,313 좌)						
(기준가격 당기: 1,291.20 원						
전기: 1,102.12 원						
전전기: 1,053.14 원)						
자 본 총 계		10,179,745		6,242,826		6,011,093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0,199,486		6,276,636		6,023,026

다. 통합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3기(2025.04.06-2026.04.05)		제2기(2024.04.06-2025.04.05)		제1기(2023.04.06-2024.04.05)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1,773		2,405		1,131
1. 이 자 수 익	1,773		2,405		1,131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284,388		186,628		217,548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611,564		16,283		216,685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672,824		170,345		863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507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507	
운 용 비 용		68,209		46,315		19,244
1. 운용수수료	40,607		27,628		11,549	
2. 판매수수료	24,278		16,532		6,853	
3. 수탁수수료	2,272		1,486		573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1,052		669		269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1,217,952		142,718		198,928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153255197		0.024925612		0.034751419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억좌, 억원)

운용펀드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25.04.06 - 2026.04.05	0.057	0.063	0.040	0.050	0.019	0.024	0.078	0.102
2024.04.06 - 2025.04.05	0.057	0.060	0.035	0.038	0.035	0.037	0.057	0.063
2023.04.06 - 2024.04.05	0.000	0.000	0.060	0.061	0.003	0.003	0.057	0.060

(주1) 2025.04.06 - 2026.04.0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5,588좌/33,039원

(단위: 억좌, 억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소득공제(C-E)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25.04.06 - 2026.04.05	0.057	0.062	0.041	0.050	0.019	0.023	0.079	0.102
2024.04.06 - 2025.04.05	0.057	0.060	0.035	0.038	0.035	0.037	0.057	0.062
2023.04.06 - 2024.04.05	0.000	0.000	0.060	0.061	0.003	0.003	0.057	0.060

(주1) 2025.04.06 - 2026.04.0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5,882좌/33,039원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수익률 (세전기준)

(단위:%)

기간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이후
	25.04.07 ~ 26.04.06	24.04.07 ~ 26.04.06	23.04.07 ~ 26.04.06	-	23.04.06 ~ 26.04.06
웰컴공모주알파청년형소득공제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형]	17.87	11.09	9.19	-	9.20
비교지수	15.44	5.02	5.10	-	5.08
수익률변동성(%)	12.44	10.08	8.43	-	8.4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소득공제(C-E)	16.90	10.17	8.39	-	8.41
비교지수	15.44	5.02	5.10	-	5.08
수익률변동성(%)	12.44	10.08	8.43	-	8.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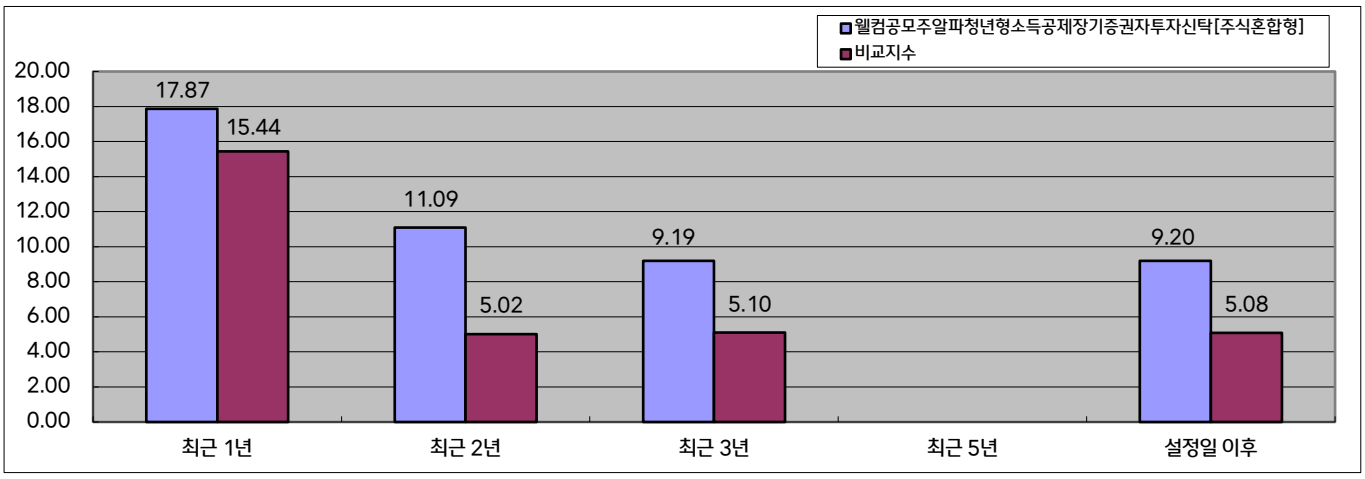

(주 1) 비교지수 : (KOSDAQ150지수 * 20%)+(KRX부동산리츠인프라지수 *30%)+(CD금리 * 50%)

①설정일부터 2023년 4월 24일까지 : (KOSDAQ150지수 * 20%)+ (CD금리 * 80%)

②2023년 4월 25일부터 2026년 4월 9일까지 : (KOSDAQ150지수 * 20%)+(KRX리츠TOP10지수 *30%)+(CD금리 * 50%)

③2026년 4월 10일부터 현재 : (KOSDAQ150지수 * 20%)+(KRX부동산리츠인프라지수 *30%)+(CD금리 * 5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5)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 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이며 해당기간 펀드의 연 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5.04.07 ~ 26.04.06	24.04.07 ~ 25.04.06	23.04.07 ~ 24.04.06	-	-
웰컴공모주알파청년형소득공제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형]	17.87	4.70	5.52	-	-
비교지수	15.44	-4.47	5.26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소득공제(C-E)	16.90	3.83	4.95	-	-
비교지수	15.44	-4.47	5.2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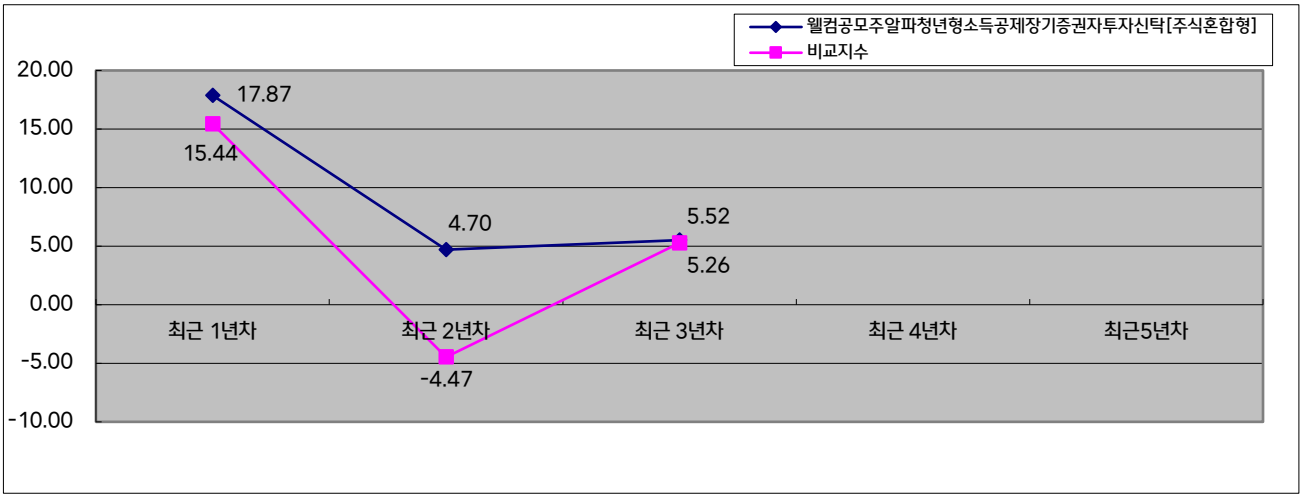

(주 1) 비교지수 : (KOSDAQ150지수 * 20%)+(KRX부동산리츠인프라지수 *30%)+(CD금리 * 50%)

①설정일부터 2023년 4월 24일까지 : (KOSDAQ150지수 * 20%)+ (CD금리 * 80%)

②2023년 4월 25일부터 2026년 4월 9일까지 : (KOSDAQ150지수 * 20%)+(KRX리츠TOP10지수 *30%)+(CD금리 * 50%)

③2026년 4월 10일부터 현재 : (KOSDAQ150지수 * 20%)+(KRX부동산리츠인프라지수 *30%)+(CD금리 * 5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 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 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 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 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26.04.06. 현재 / 단위: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0	0	0	0	0	0	0	0	0
	(0.00)	(0.00)	(0.00)	(98.86)	(0.00)	(0.00)	(0.00)	(0.00)	(0.00)	(1.14)	(0.00)	(100.00)
합계	0	0	0	0	0	0	0	0	0	0	0	0
	(0.00)	(0.00)	(0.00)	(98.86)	(0.00)	(0.00)	(0.00)	(0.00)	(0.00)	(1.14)	(0.00)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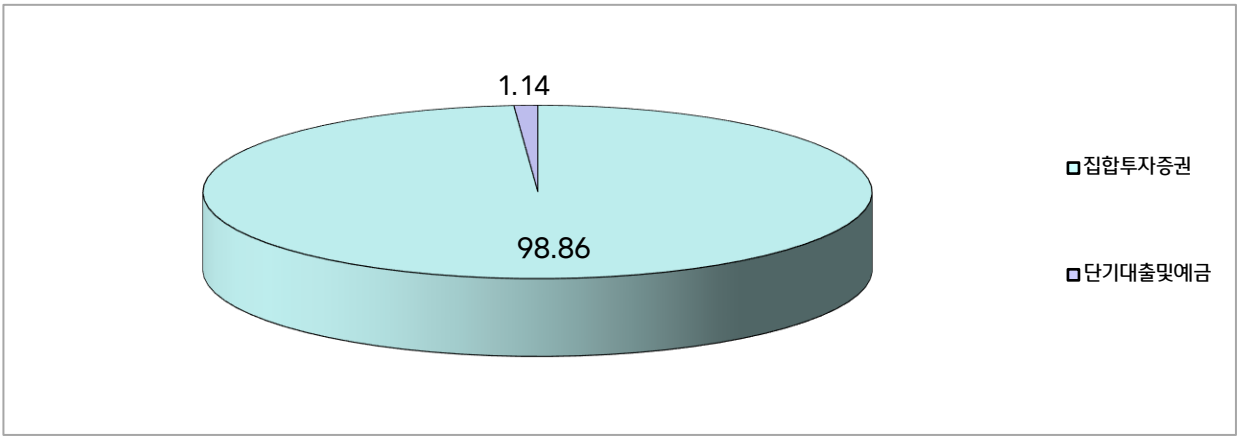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26.04.06. 현재 / 단위: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26	0	0	7	0	0	0	0	0	3	9	45
	(57.93)	(0.00)	(0.00)	(15.39)	(0.00)	(0.00)	(0.00)	(0.00)	(0.00)	(6.28)	(20.40)	(100.00)
합계	26	0	0	7	0	0	0	0	0	3	9	45
	(57.93)	(0.00)	(0.00)	(15.39)	(0.00)	(0.00)	(0.00)	(0.00)	(0.00)	(6.28)	(20.40)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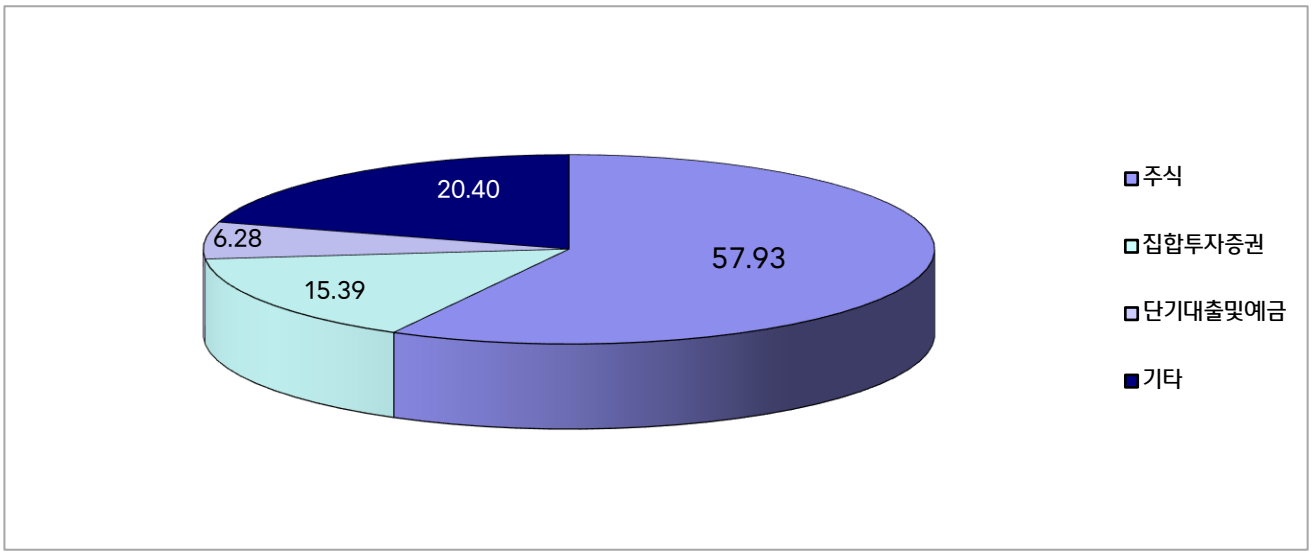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펀드 운용 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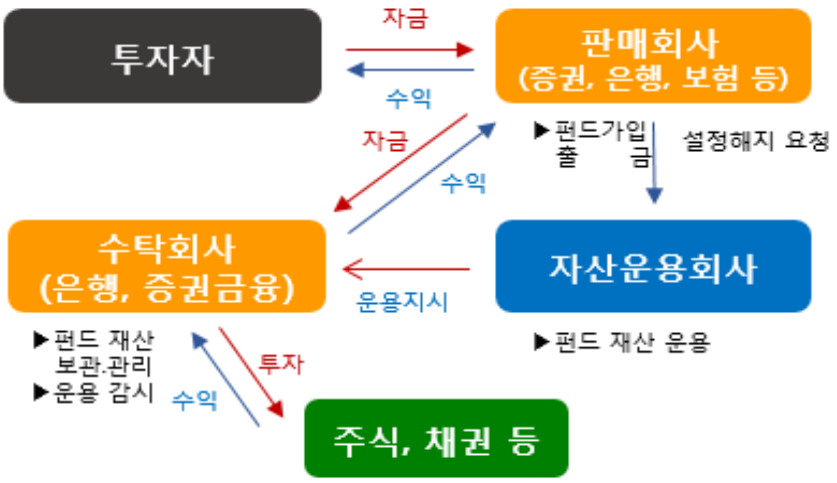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웰컴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48, 웰컴금융타워 15층 (연락처: 02-6353-7300, www.welcomefund.co.kr)
회사연혁	2000. 03. 13: AIG 투자자문코리아주식회사 설립 2008. 07. 2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 자산운용업 인가 2008. 09. 01: 에이아이지자산운용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2009. 02. 04: 자본시장법에 의거 금융투자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인가 전환 2009. 10. 16: 파인브릿지 자산운용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2017. 07. 19: 에셋원자산운용㈜으로 사명 변경 2022. 04. 19: 웰컴자산운용㈜으로 사명 변경 2022.10. 24: 본점 소재지 이전
납입자본금	125억원
주요주주현황	웰컴크레디라인㈜(100%)
이해관계인	해당 사항 없음 ※이해관계인 현황은 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상황이며, 운용펀드의 수탁 및 판매현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

[요약대차대조표]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7 기 ('25.12.31.)	제 26 기 ('24.12.31.)
현금및예치금	7,297	7,839
매도가능금융자산	18,435	12,394
유형자산	8,000	8,295
무형자산	56	62
기타자산	2,046	2,057
자산총계	**35,834**	**30,647**
기타부채	10,381	8,980
부채총계	**10,381**	**8,980**
자본금	12,512	12,512
주식발행초과금	1,054	1,054
자본조정	-	-
이익잉여금(결손금)	11,960	8,101
자본총계	**25,526**	**21,667**
부채와자본총계	35,834	30,647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27 기 (25.01.01~25.12.31)	제 26 기 (24.01.01~24.12.31)
영업수익	11,983	7,594
영업비용	7,087	7,417
영업외손익	12	8
법인세차감전순이익	4,908	187
당기순이익	3,859	164

라. 운용자산 규모(2026.04.06. 기준 / 단위: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	총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	파생형					
수탁고	1,139	566	4,139	-	913	1,434	9,331	-	621	4,384	22,529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0 (대표전화: ☏02-3770-8800)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ksfc.co.kr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 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 사항

- ㅇ 투자설명서가 관련법령・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ㅇ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ㅇ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ㅇ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ㅇ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ㅇ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ㅇ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 ㅇ 신탁업자는 위의 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대표전화: ☏02-2180-0400)
인터넷 홈페이지	www.shinhanfundpartners.com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의무]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및 채권평가 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종로구 율곡로88 ☏ 02-2251-1300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여의도동35-4 ☏ 02-3215-1400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11 ☏ 02-398-3900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ap.com	www.bond.co.kr	www.nicepni.com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어 그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 363 조제 1 항 및 제 2 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합니다. 이 경우 "주주" 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봅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③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②의결권 행사방법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위의 ②의결권 행사방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법 제188조제2항 각호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5)의 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 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투자신탁의 합병(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10)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시행령 제2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 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와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 매한 판매회사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 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5조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

반한 경우로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 제 125조 각호의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 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 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투자자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규모집합투자기구를 처리계획을 수행합니다.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 개월이 되는 날에 이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15억 미만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당사의 대표 집합투자기구(투자대상 자산이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당사가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이 최초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의 해지되거나, 수익자총회 없이 당사의 대표 집합투자기구(투자대상 자산이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당사가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방법 이외에도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합병하는 방법 또는 소규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 마다 1 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항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 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집합투자기구의 자산

· 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는 비율인 매매회전율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법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 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 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 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welcomefund.co.kr)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전자우편으로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그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시행령 제93조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 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 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투자 증권 거래>	①선정시 고려사항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②매매 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 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매매 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 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가. 회사 경영관련 비용 나.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다. 마케팅비용 라.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마.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 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주1) 매매 대가 이익: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가. 의무투자

- 해당사항 없음

나. 추가투자

-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용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 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 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